

의안번호	제231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17.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예 산 군 수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1호
----------	-------

제출년월일 : 2023. 11. 17.

제출자 : 예산군수

1. 제안이유

-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고령층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예방 효과가 높아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도모하고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변경(안 제2조)

- (현행) 만 65세 이상 주민

↳ (개정) 60세 이상 주민(해당연도 12. 31. 이전 출생자)

나. 지원대상 연령에 관한 특례 변경(부칙 제2조)

- (현행) 이 조례 시행일 첫해에 한하여 만 70세 이상으로 한다.

↳ (개정) 2023년에는 70세 이상, 2024년에는 60세 이상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제3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붙임 1】**

나. 예산조치: 2024년 본예산 요구

다. 기타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2023. 10. 19. ~ 11. 7. [20일간]
- 3) 비용추계서: **【붙임 2】**
- 4) 성별영향평가: **【붙임 3】**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65세이상 주민”을 “60세 이상 주민(해당연도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을 “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보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연령에 관한 특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70세 이상, 2024년에는 60세 이상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만 65세 이상 주민</u>으로 한다.</p> <p>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u>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u>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u>보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함으로 증명서 없이 방문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2조(지원대상) ----- ----- ----- <u>60세 이상 주민(해당연도 12. 31. 이전 출생자)</u>-----.</p> <p>제4조(지원절차) ① ----- ----- <u>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u>은 ----- ----- ----- ----- ----- <u>보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붙임 1】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예산군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 60세 이상 예산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함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대상포진 접종 1회 지원(첫해는 70세 이상, 이듬해는 60세 이상 실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세입						
세출	백신비+시행비	1,140,000	1,032,000	80,000	80,000	2,332,000
□ 총 비용		1,140,000	1,032,000	80,000	80,000	2,332,000

4. 재원조달 방안 : 군비 2,332,000천원

5. 작성자 : 예산군 보건소장 최승묵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구수	미접종자 (인구의 87%)	계획인원 (대상인원의 약 60%) (A)	접종비용 (1인당)* (B)	절감비용** (C)	소요예산 (A*B)-C
2023년 (70세이상)	18,731	15,740	10,000	120	60,000	1,140,000
2024년 (60~70세)	17,704	15,070	9,042	120	53,040	1,032,000
2025년 (60세)	1,287	1,165	699	120	3,880	80,000
2026년 (60세)	1,287	1,165	699	120	3,880	80,000

* 접종비용 : 백신비 100,000원 + 시행비 20,000원

** 보건기관 시행비 1인당 20,000원 절감(30% 산정)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예산072		
정책명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박소희	전화번호 041-339-603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미/041-339-7912)			
보건행정과장 귀하			

담당자 현황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행정과장 강정이 김염병관리팀장 이지순 담당자 박소희 ☎339-6035】